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A1BL) 민영주택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청약조건 및 계약조건등을 고려하지 않는 청약으로 인하여
실수요자들의 당첨 및 계약기회가 상실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아파트에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청약조건	계약조건	기타조건
▶ **수원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인 1주택** :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동일 세대에 2인 이상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 됨. ▶ **청약제한조건 등** : 재당첨제한, 공급질서교란, 부적격당첨에 따른 기간, 당 주택 당첨(예비입주자중 추가입주자로 선정포함) 등에 따라 청약제한.	▶ **계약금 20%** : 분양가가 895,600,000원일 경우 분양가의 20%인 179,130,000원을 **일시 납부 후 계약 가능**. ▶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60%이며, 투기과열지구에 따라 대출은 40%범위 내에서 가능. (**20%는 자납 필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 계약 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자금조달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등)	▶ **전매제한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8년간**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간** 계속하여 거주.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대체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prugio.com/ht/2022/yeongtong1)을 운영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 계약체결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실 수 있으며 동반자 동행가능 여부는 추후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게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입장 시에는 마스크, 체온체크 등 예방 절차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기간 내 견본주택 방문은 날짜 및 시간을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견본주택 체류시간 등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시적 과도한 집객방지를 위함의 조치이므로 양해바랍니다.)
 * 해당 방문 예약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을 경우(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규제지역) '21.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아파트에 입주자(추가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27.(수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2910215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04.(수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243 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수원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당첨시 부적격 당첨 또는 무효처리 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적용받지 아니한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에 관한 사항

구분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기간	**8년**
거주의무기간	**3년**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8월 1일(월요일)	8월 4일(목요일)	8월 11일(목요일)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당사 견본주택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수원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청약신청은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에 당첨 후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021.11.16.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종전부동산 망포지구 A1블록 (망포동 234-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9~24층 13개동 총 796세대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98세대
■ 입주시기 : 2025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 호수
민영 주택	2022910215	01	084.9503A	84A	4	105-504, 105-1303, 105-1704, 109-803
		02	084.4066C	84C	17	101-1003, 101-1103,104-102, 104-202, 105-902, 107-1802, 107-1902, 108-102, 108-402, 108-1602, 109-202, 109-1202, 110-403, 111-1603, 112-903, 113-703, 113-903
		03	084.8119D	84D	21	101-501, 102-101, 102-301, 102-501, 102-801, 102-1501, 102-1701, 102-2001, 106-401, 106-801, 106-901, 110-201, 110-1901, 111-501, 111-601, 111-901, 111-1101, 112-501, 112-801, 112-1001, 112-1201
		04	105.4911A	105A	36	101-202, 102-402, 102-702, 102-1002, 102-1202, 102-1802, 102-2002, 102-2402, 103-202, 103-502, 104-503, 104-601, 104-701, 106-202, 106-1602, 107-401, 107-403, 107-803, 107-1001, 107-1501, 108-101, 108-203, 108-301, 108-303, 108-901, 108-1101, 108-1301, 108-1801, 109-1101, 110-1002, 110-1602, 110-1902, 112-902, 112-1102, 113-302, 113-602
		03	105.7800B	105B	20	101-604, 101-1204, 101-1504, 101-1604, 101-1904, 101-2004, 102-404, 103-1304, 106-1204, 106-2304, 110-204, 110-504, 110-1504, 111-1204, 111-1704, 112-404, 112-504, 112-704, 112-1104, 113-404
	합 계				98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동호별	약식 표기	층수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20%)	중도금(60%)						잔금 (2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2022.09.05.	2022.12.05.	2023.04.05.	2023.12.05.	2024.04.05.	2024.08.05.	입주지정일
084.9503A	105동 3호,4호 109동 3호	84A	5층이상	4	489,800,000	265,500,000	-	755,300,000	151,060,000	75,530,000	75,530,000	75,530,000	75,530,000	75,530,000	75,530,000	151,060,000
084.4066C	101동,110동,111동, 112동,113동 3호 104동,105동,107동 108동,109동 2호	84C	1층	2	439,400,000	238,100,000	-	677,500,000	135,500,000	67,750,000	67,750,000	67,750,000	67,750,000	67,750,000	67,750,000	135,500,000
			2층	2	453,700,000	245,900,000	-	699,600,000	139,920,000	69,960,000	69,960,000	69,960,000	69,960,000	69,960,000	69,960,000	139,920,000
			4층	2	468,000,000	253,700,000	-	721,700,000	144,340,000	72,170,000	72,170,000	72,170,000	72,170,000	72,170,000	72,170,000	144,340,000
			5층이상	11	477,600,000	258,800,000	-	736,400,000	147,28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147,280,000
084.8119D	101동,102동,106동, 110동,111동,112동 1호	84D	1층	1	437,900,000	237,300,000	-	675,200,000	135,04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135,040,000
			2층	1	452,100,000	245,100,000	-	697,200,000	139,44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139,440,000
			3층	1	459,300,000	248,900,000	-	708,200,000	141,640,000	70,820,000	70,820,000	70,820,000	70,820,000	70,820,000	70,820,000	141,640,000
			4층	1	466,400,000	252,800,000	-	719,200,000	143,840,000	71,920,000	71,920,000	71,920,000	71,920,000	71,920,000	71,920,000	143,840,000
			5층이상	17	475,900,000	258,000,000	-	733,900,000	146,780,000	73,390,000	73,390,000	73,390,000	73,390,000	73,390,000	73,390,000	146,780,000

105.4911A	101동,102동,103동,106동,110동,112동,113동 2호 104동,107동,108동 1호, 3호 109동 1호	105A	1층	1	517,980,000	278,200,000	27,820,000	824,000,000	164,8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164,800,000
			2층	4	534,870,000	287,300,000	28,730,000	850,900,000	170,18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170,180,000
			3층	3	543,320,000	291,800,000	29,180,000	864,300,000	172,860,000	86,430,000	86,430,000	86,430,000	86,430,000	86,430,000	86,430,000	172,860,000
			4층	3	551,770,000	296,300,000	29,630,000	877,700,000	175,54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175,540,000
			5층이상	25	562,960,000	302,400,000	30,240,000	895,600,000	179,120,000	89,560,000	89,560,000	89,560,000	89,560,000	89,560,000	89,560,000	179,120,000
105.7800B	101동,102동,103동,106동,110동,111동,112동,113동 4호	105B	2층	1	534,770,000	287,300,000	28,730,000	850,800,000	170,160,000	85,080,000	85,080,000	85,080,000	85,080,000	85,080,000	85,080,000	170,160,000
			4층	3	551,770,000	296,300,000	29,630,000	877,700,000	175,54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175,540,000
			5층이상	16	562,960,000	302,400,000	30,240,000	895,600,000	179,120,000	89,560,000	89,560,000	89,560,000	89,560,000	89,560,000	89,560,000	179,120,000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수원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당첨된 자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2022.08.12.(금요일) 10:00 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별 동·호수 선정하여 진행하며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2022.08.12.(금요일)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공급계약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서류유형		발급대상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 발급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계약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 입금증	○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수입인지(인지세)	○		-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후 출력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 유의사항, 작성발법 및 샘플을 참고하여 항목별 작성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 미제출사유서	○		-	· 자금조달계획 내 항목별 증빙자료 · 미제출 사유서 ※ 증빙자료 중 예금잔액증명서는 당일자 기준 발급 시 발급시점부터 당일 끝나는 자정까지 입출금, 체크가드 결제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계약시 추가제출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불가
	위임장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2.07.27.(수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배우자분리세대(존속 배우자의 분리세대, 외국인 배우자포함)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분리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검색결과 확인으로 통보가 늦어질 수 있으며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는 미불출 됩니다. (최종 확인 후 별도통보 예정)

■ 당첨자 계약체결

구분	계약체결	계약체결 장소
무순위(사후) 당첨자	**2022.08.11.(목)** (10:00~17:00) ※ 방문예약제 :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운영 예정이며 추후 안내 예정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1)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경남은행	207-0139-3753-03	엔에이치투자증권㈜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계약금 납부 : 계약금 납부계좌로 입금 (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경남은행, 207-0139-3753-03, 엔에이치투자증권㈜)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체결일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대출개시일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 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중도금 1차 기일(2022.09.05.)이 임박하여 계약 후 즉시 대출자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무순위(사후) 아파트의 계약자 분양권의 배우자 증여(부부공동명의)는 관련법령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권 전매동의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중도금 1차 기일 (2022.09.05.) 이후 진행 가능합니다.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사후) 아파트의 공급계약 체결 시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향후 다른 주택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향후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기간 향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5.04.)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t/2022/yeongtong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1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www.prugio.com/ht/2022/yeongtong1
■ 분양문의 : 1599-1566